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허3588 등록무효(특)

원 고 A

일본국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담당변리사 권혁성

피 고 1.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2.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4. 19. 2021당327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676449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¹⁾

- 1) 발명의 명칭: 호안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블록 및 그 시공공구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9. 23./ 2007. 1. 24./ 특허 제676449호
- 3) 특허권자: 원고
- **4) 청구범위**(2022. 2. 7.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호안(護岸)(shore protection) 등에 사용하는 캐스트 스톤(cast stone)을 배치한 콘크리트 블록에 있어서, 상기 콘크리트 블록의 단위 블록은 <u>면부(2) 및 기반(3)으로 구성되며</u>, 외형을 동일한 형상으로 하여 상하좌우로 연속 부착 시공이 가능하게 한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다각형 형상이고, <u>각각의 블록(1)의 기반(3)의 접합부는 지</u>그재그 형상으로 하여 빗물통로를 형성하고 각각의 코너 부분을 45도로 모따기함과 동

¹⁾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에, 상기 단위 블록의 외주부와 상기 캐스트 스톤의 사이에는 제방부(堤防部)를 설치하고, 상기 제방부의 정상부를 지그재그 형상으로 하고 측면부를 파형으로 하며, 상기단위 블록의 양단부의 근방에 상하 방향으로 단위 블록 고정 연결용을 겸한 시공 관통 봉용 관통공을 설치하고, 상기 관통공은 상기 단위 블록을 조합한 때에는 상하 방향으로 직선 형상으로 연통하도록 설치되고, 상기 관통공의 출입구에는 공간을 구성하는 통수용(通水用) 절단부를 형성하는 오목부를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블록(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생략)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0002] 본 발명은 산, 하천 또는 호수 등의 경사면의 붕괴 예방 및 녹화 공사에 사용하는 객토(客土) 블록, 복토(覆土) 블록 및 콘크리트 블록의 호안(護岸)(shore protection) 공사를 용이하게 하는 작업 공구(ingredient)의 기술분야에 관한 것이다.

[H] **기술적 과제**

[0021]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과제 중 하나는 연속 부착 시공이 가능하게 된 단위 블록의 각각의 면은 다각형의 기하학적 형상이더라도, 각 측면의 코너 부분의 각도는 크게 하고 더욱이, 방토 구조물의 직선 부분을 배제하여 흙이 퇴적하는 콘크리트 블록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블록의 시공이 간단한 콘크리트 블록의 시공 공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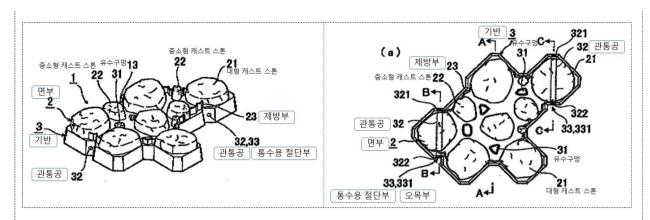
[0052]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항 1항의 발명에 의하면, 종래에는 볼록 형상의 접합부분이 90도 정도의 예각이었기 때문에, 운반시 및 시공시에 볼록 형상의 접합부분이 다른 부재에 충돌한 때에 파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각각의 코너 부분을 45도로 모따기함으로 써 파손의 경우가 감소된다. 더욱이, 각 블록의 기반 사이에는 지그재그 형상으로 뱀 모양으로 진행하는 빗물 통로를 형성하여 빗물 통로가 긴 직선으로 되는 것을 회피하여 빗물 등의 유속을 약화시키고, 또한, 빗물 통로는 큰 지그재그 형상의 수로와 더욱 작은 제방부의 작은 지그재그 형상의 측면부에 의해 주어지고, 전체적으로 빗물의 속도를 감속시키고, 또한, 제방부가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이며, 블록 전체 및 세부부분도 직선 형상은 아니어서 빗물 등의 유속을 늦게 하여, 객토 및 복토의 유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얻어진다.

[0053] 더욱이, 블록의 외형으로부터 긴 직선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더욱 자연의 외관에 가깝게 할 수 있고, 제방부의 정상부도 직선이 아닌 작은 지그재그 형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도록 되고, 알프스 산맥이 연상되도록 되고, 전체로서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콘크리트 블록을 시공한 호안은 그 블록 자체의 캐스트 스톤이 지극히 자연의 모양과 유사하여, 예술적 표현 기법의 것이고, 또한, 각각의 코너 부분을 45도로 모따기하였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하여 사람에게 감동 및 심리적 안정을 주는효과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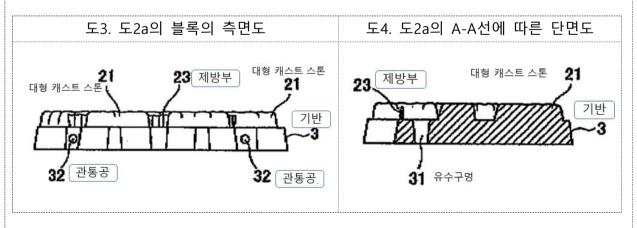
[0054] 청구항 2항의 발명에 의하면, 블록 고정 연결봉 용으로 설치된 관통공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한, 블록 전체는 블록 걸림편을 아래로 하여 경사되고, 블록 전체는 블록 걸림편에 압접하기 때문에 블록 걸림편이 블록(1)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고, 확실히 고정되므로 안전하고, 블록의 시공 공사 현장으로의 운반 및 이동이 용이하게 되고, 또한 시공 현장에서의 호안의 경사각에 맞추어 특이한 각도의 경사로 시공하는 것이 용이하고, 작업이신속히 행해지는 효과가 얻어진다.

라 발명의 구체적 내용

도1. 본 발명 실시예의 사시도	도2a. 도1의 콘크리트 블록의 평면도



[0027] 도 1은 본 실시예의 평판형 콘크리트 단위 블록의 사시도인데, 단위 블록(1)은 면부 (面部)(2) 및 기반(基盤)(3)으로 구성되고, 면부(2) 및 기반(3)은 도 6에 도시되듯이 전후좌우로 연속 부착 시공이 가능하게 한 특정 다각형의 기하학적 형상이고, 면부(2)에는 복수의대형 캐스트 스톤(21) 및 중소형 캐스트 스톤(22)을 배열하고, 각각의 캐스트 스톤(21, 22)은 서로 접촉되는 동시에, 캐스트 스톤(21, 22)의 틈새에는 빗물 및 강물 등이 지반(地盤)으로 흘러 들어가는 복수의 유수 구멍(31)을 설치하고, 블록의 외주부와 캐스트 스톤(21)과의사이에는 제방부(堤防部)(23)를 설치하며, 도 2에 도시하듯이 블록의 양단의 부근에 상하방향으로 블록 고정 연결봉용 상부 관통공 출구(321)와 하부 관통공 출구(322)를 관통하는 관통공(32)을 설치하고, 이 관통공(32)은 단위 블록을 조합한 때에는 상하 방향으로 직선형상으로 관통하도록 설치되고, 관통공(32)의 기반(3)의 출입구에는 공간을 구성하는 통수용 절단부(33)를 형성하는 오목부(331)가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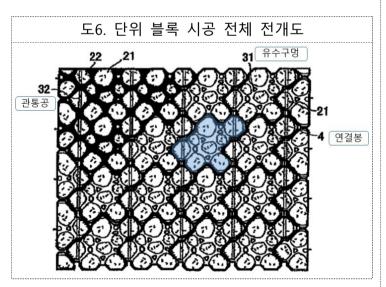
[0028] 우선, 단위 블록(1)의 면부(2) 및 기반(3)의 외형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형상

인데, 각각의 코너 부분은 45도로 모따기함과 동시에, 도 6에 도시하듯이, 서로 결합하여 상하좌우로 연속 부착 시공이 가능한 형상이다.

[0029] 블록(1) 외형 중 각각의 코너 부분을 45도로 모따기함으로써, 종래에는 코너부분이 90도 정도의 예각이었기 때문에 운반 시 및 시공 시에 볼록 형상 접합부분이 다른 부재에 충돌한 때에 파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45도로 모따기 되어 있어 감소한다. 더욱이, 보다 자연적인 외관에 가깝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블록(1)을 제작하는 수지로 된 형틀도 직각 부분이 없고 강도가 향상된다.

[0030] 더욱이, 블록의 외형은 도 6에서 보여지듯이, 전체로서 뱀 모양으로 진행하여 각각의 블록(1)의 기반(3)의 접합부는 지그재그 형상으로 뱀 모양으로 진행하는 빗물 통로를 형성하고, 빗물 통로가 직선적으로 되는 것을 회피한다. 또한, 빗물 통로가 큰 지그재그 형상의 수로보다 작은 뱀 모양의 수로가 후술하듯이 제방부(23)(도 2b 참조)의 작은 지그재그형상의 측면부(232)에 의해 주어지고, 전체적인 형상 및 세부적인 부분도 직선형상은 아니기 때문에 빗물 등의 유속을 느리게 되도록 할 수 있다.

[0031] 이 제방부(23)의 정상부(頂上部)(231)의 봉우리는 가늘고, 높이는 일정하여 수평인 캐스트 스톤(21)의 높이보다 약간 낮게 되어 있고, 제방부(23) 전체는 도 2a 및 도 2b에 보여지듯이 직선이 아니고 지그재그 형상이고, 측면부(232)를 파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면에서는 정상부(231)는 평탄한 평면으로 도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작은 오목 볼록이 존재하여 자연에 조화되는 외관을 준다. 따라서, 제방부(23)를 설치함으로써, 정상부(231)의 높이 이하에서는 토사는 흐르지 않고 객토 형태로 퇴적하고, 흐름이 완만한 경우에는 정상부(231)를 넘어 캐스트 스톤(21)의 높이까지 도

달하여 복토 형태로 토사가 퇴적한다. 제방부(23)의 정상부(231)의 봉우리를 가늘게 한 것은 빗물 통로의 대부분이 객토와 복토로 매몰되어, 정상부(231)의 선모양이 약간 노출될뿐 눈에 띄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0032] 상기 유수 구멍(31)은 작은 관목의 뿌리가 유수 구멍(31)을 거쳐 땅속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기반(3) 상의 객토 및 복토 속에도 뻗어 나가고 또한 인접한 유수 구멍(31)으로부터 도 땅속으로 연장하므로, 객토 및 복토 블록은 그 자중과 객토 및 복토의 중량에 의한 경사면에의 정착화를 강화하고, 식목한 관목의 뿌리의 장력에 의해 객토 및 복토 블록(1A)(도 7a)의 붕괴 방지와 객토 및 복토의 유실을 저지하고, 객토 및 복토 블록이 콘크리트로 되어도 객토 및 복토 상에 서식하는 초목은 다수 설치되어 있는 유수 구멍(31)으로부터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 수분이 보급되어 고사하는 일이 없다.

[0033] 상기 블록의 좌우방향으로 돌출한 양단측의 근방에 상하 방향으로 블록 고정 연결 봉용 관통공(32)을 설치하고, 또한 관통공(32)은 단위 블록을 조합한 때에는 상하 방향으로 직선 형상으로 연통하도록 설치되어, 관통공(32)의 기반(3)의 출입구에는 공간을 구성하는 연결 작업과 물의 유통을 겸한 통수용 절단부(33)를 형성하는 오목부(331)가 설치된다.

[0034] 상기 관통공(32)의 출입구에 설치된 L자형의 통수용 절단부(33)와, 인접 블록의 L자형 통수용 절단부(33)에 의해, 도 9에 도시되듯이 장방형으로 지반(地盤)에 연통하는 연통 공을 형성하고, 관통공(32)에는 도 8a에 도시한 바와 같은 연결봉(4)을 삽입하는데, 이 연결봉(4)의 단부에는 후크부(41)가 설치되고, 인접한 연결봉(4)은 후크부(41)에 의해, 도 8b에 도시된 U자부(431)와 볼트(432)로 구성된 연결편(43)에 의해 도 9에 도시된 상태로 연결된다. 이 연결 상태는 블록간의 통수용 절단부(33)로 형성된 배수공인 공간으로 이루어지지만, 도 9에 도시하듯이 인접하는 연결봉(4)의 후크부(41)와 연결편(43)으로 느슨하게 연결되는데, 이것은 블록이 정착할 때가지 시간이 걸리고, 다소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쿠션으로서의 기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0038] 따라서, 블록(1)의 외형의 측면을, 각각의 코너 부분을 45도로 모따기함으로써, 예각의 코너부가 없게 되어 운반 및 시공 시에 파손되는 경우가 적고, 각각의 블록의 기반 사

이에는 지그재그 형상으로 뱀 모양으로 진행하는 빗물 통로를 형성하여 빗물 통로가 긴 직선으로 되는 것을 회피하여 빗물 등의 유속이 약하게 되고, 또한, 빗물 통로는 큰 지그재그 형상의 수로와 보다 작은 제방부의 작은 지그재그 형상의 측면부(232)에 의해 주어지고, 빗물의 흐름의 속도를 감속시키고, 더욱이 제방부(23)가 눈에 띄게 되지 않게 되고, 블록(1)의 전체 및 세부부분도 긴 직선형으로는 되지 않아 빗물 등의 유속을 완화시키고, 객토 및 복토의 유실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로를 형성하는 부분에 긴 직선부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더욱 자연적 외관에 가깝게 할 수 있고, 도 2b에 도시하듯이 제방부도 눈에 띄지 않게 되도록 직선이 아니고 작은 지그재그 형성으로 하고, 알프스 산맥을 이미지로 하여 전체로서 예술적인 표현한 것이다.

[0039]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콘크리트 블록을 시공한 호안은 그 블록 자체의 캐스트 스톤이 지극히 자연적 모양에 가까워서 예술적 표현법으로 한 것이고, 또한, 각각의 코너 부분을 45도로 모따기 하였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하여 사람에게 감동 및 심리적 안정을 준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3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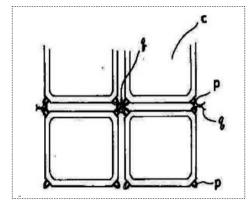
2001. 2. 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32289호에 게재된 '객토, 복토 블록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산이나 하천 또는 호수와 늪 등의 경사면의 붕괴 예방 및 녹화 공사에 사용하는 객토 ·

도3. 종래 블록 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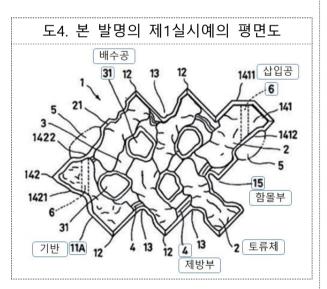
복토 블록 및 그 시공 방법의 기술 분야에 속한다. [0003] <전략> 또, 다른 복토 블록 등의 블록(c)의 고정 수단으로서는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블록의네 귀퉁이에 후크p를 고정하고, 서로 이웃하는 후크p끼리를 결합하는 철사 q로 묶어 고정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바 발명의 구체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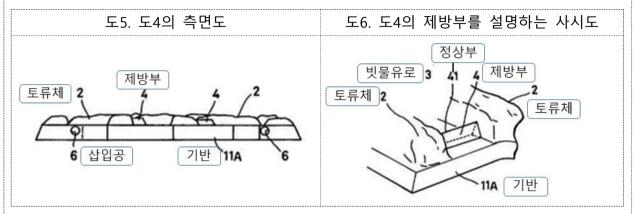
[0006] 여기서 본 발명에 매우 적합한 객토 또는 복토 블록의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먼저, 제1의 실시예를 설명하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진열석(並石)이 되는 객토·복토 블록 1A(도 10 참조)의 평면도 도 5는 그 측면도이고, 기반(11A)의 측벽은 전후 방향으로 돌출부(12)와 함몰부(13)을 설치하고, 좌우방향에 돌출부(141,142)와 함몰부(15)를 설치하고, 이 각 돌출부와 함몰부를 서로 이웃하는 블록(1)의 각 돌출부와 함몰부에로킹(locking)시켜 고정한다. 이 각 돌출부와 함몰부는 도시한 바와 같이 복잡한 형상으로

자연석에 가까운 형상인 것과 동시에, 끼워 넣어지는 형상이며 서로 이웃하는 블록 (1A)(1B,1C,1D)과는 감합 조립 시공 가능의 형상이다. 기반(11A) 상에는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 적당의 높이로 기반(11A)으로부터 돌출하는 지그재그상에 배치한 복수의 토류체(2)를 설치해 토류체(2)의 윗면을 자연석과 같이 요철로 하는 것과 동시에, 측면부(21)도 자연석과 같이 큰 요철을 형성해 각 토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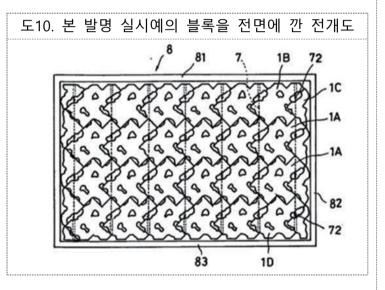


(2) 사이는 기반(11A) 상에서 지그재그상으로 사행한 빗물 유로(3)를 형성해 이 각 토류체(2)의 배열군(群)에 있어서 기반(11A) 상에 형성되는 삼투수(滲透水)의 빗물 유로(3)가 직선형이 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즉, 빗물 유로(3)의 큰 지그재그상의 사행(蛇行)은 토류체(2)

의 배열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보다 작은 지그재그상의 사행(蛇行)은 토류체(2)의 측면부 (21)에 형성된 큰 요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0007] 또,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빗물 유로(3)의 기반의 측면부에 토류체(2)보다도 약간 낮은 단면이 삼각형의 제방부(4)가 설치되고, 제방부(4)의 정상부(41)는 직선혹은 사행하는 곡선이지만 수평으로 이루어지며, 정상부(41)의 높이이하에서는 토사는 흐르지 않고 객토상으로 퇴적해 흐름이 완만한 경



우에는 정상부(41)를 넘어 토류체(2)의 높이까지 달해 복토상으로 토사가 퇴적한다. 이 빗물 유로(3)에는 기반(1)을 상하로 관통하는 배수구멍(31)이 설치되며, 이 배수구멍(31)은, 소관목의 뿌리가 배수구멍(31)을 통해 지중에 뿌리를 내림과 아울러 기반(11A) 상의 객토·복토 안에도 인접의 배수구멍(31)으로부터도 지중으로 뿌리가 내림으로써 객토·복토 블록(1A)은 그 자중과 객토·복토의 중량에 의한 경사면으로의 정착화에 가세해 식재 관목의 뿌리퍼짐에 의해서 객토·복토블록(1A)의 붕괴 방지와 객토·복토의 유실을 저지해 객토·복토 블록(1A)이 콘크리트제이더라도 객토·복토상에 심어지는 초목은 배수구멍(31)으로부터의 모세관 현상에 의한 수분의 보급에 의해서 고사하는 것이 없다.

2) 선행발명 6(을 제5호증)

1975. 11. 11.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20-1975-892호에 게재된 '립 죠인트 블록'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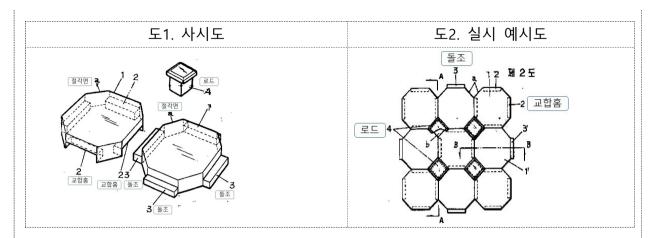
과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2] 본 고안은 립 죠인트(Rip-Joint)의 원리를 이용하여 시멘트 몰타르의 접합제를 사용함이 없이 평면적으로 연쇄결합(連鎖結合)하여 시공할 수 있게 한 립 죠인트 블록에 관한 것이다.

[0003] 종래 블록체의 주연부에 턱이나 요입부를 형성하여 블록체끼리 교합되게 결합하여 시공하는 것이 있으나 대부분 시멘트 몰타르 등의 접합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 시공비가보다 높게 되고 시공된 후에도 일부의 블록체가 어떤 원인으로 이탈되면 그후에 연쇄적으로 다른 볼록체가 이완되면서 제방의 보호기능이 상실되는 미비점이 있었다.

때 발명의 구체적 내용

[0004] 본 고안은 종래의 블록체와는 달리 블록체의 중량이 결합부분에 미치어 사방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하여 립죠인트 및 로드(Rod) 죠인트의 원리를 병용하여 모서리가 45도각 도로 절단된 절각면(切角面)을 가진 정사각형 블록체의 4변에 가로와 세로의 비가 1 : 2 이상으로된 교합흠을 형성하고 또한 절각 정사각형 블록체의 4면의 각연부에는 상대 볼록체의 교합흠에 교합할 수 있는 돌조를 사방향으로 각각 돌설하여 블록체의 돌조를 상대의 교합흠에 교합시키어 사방으로 연쇄결합한 다음 절각면에 의하여 형성된 4각공에 4각 단면의 로드를 밀접되게 삽착하므로서 각 블록체의 하중이 결합부분의 전후 좌우 및 45도의 경사 방향으로 연결 지지되어 시멘트 몰타르를 사용하지 않어도 블록체가 부분적으로 분리 이탈되는 일이 드물고 혹 어떤 원인으로 일부의 블록체가 빠지게 되어도 다른 블록체는 견고하게 유지되어 종래의 것처럼 블록체가 연쇄적으로 이완되는 일이 없이 급류의 제방이나 도로변의 법변 또는 보도의 바닥면 등에 편리하게 시공하여 보다 오래 보호유지할수 있게 안출한 것으로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네모서리가 45도 각도로 절단된 절각면(a)을 가진 정사각형의 록블체(1)의 4변에 가로와 세로의 비가 1 : 2 이



상으로 된 교합흠(2)을 각각 형성하고 이와 동일한 절각면(a)을 가진 정사각형의 블록체(1')의 4변에는 상대 블록체(1)의 교합흠(2)에 감삽할 수 있는 돌조(3)를 각각 돌설하여 연쇄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하며 결합된 블록체(1)(1')의 절각면a)에 의하여 형성된 4각공(b에 정사각형 단면으로 된 로드(4)를 삽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들은 2021. 11.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2. 7.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3273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22. 4. 19. 원고의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3 또는 6²)을 결합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로 하고, 청구항 2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²⁾ 비교대상 발명 1, 6은 이 사건 선행발명 1, 6과 각 동일하다.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단위 블록 간 기반이 이격공간 없이 전체가 부착된다는 점, 기반의 접합부에 지그재그 형상의 빗물통로를 형성한 점, 단위 블록의 외주부와 캐 스트 스톤 사이에 제방부를 설치한 점 및 제방부의 정상부를 지그재그 형상으로 하고 측면부를 파형으로 한 점에서 선행발명들과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6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3)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선행발명 1과의 구성요소 대비표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선행발명 1(을 제3호증)
	호안(護岸)(shore protection) 등에 사용하는	○ [0001] 본 발명은 산이나 하천 또는 호
 전	캐스트 스톤(cast stone)을 배치한 콘크리트	수와 늪 등의 경사면의 붕괴 예방 및 녹화
전 제	블록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하는 객토, 복토 블록
		○ [0002] 종래 경사면 등의 붕괴 예방이
부		나 녹화를 위해서, 당업계에서 사용되어
		온 콘크리트제의 복토 블록

³⁾ 피고들은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제1차 변론조서).

		○ [도4], [도6] 토류체(2)
	상기 콘크리트 블록의 단위 블록은 면부(2)	○ [도4], [도6] 모뉴세(2) ○ [도4], [도5], [도6] 기반(11A) 및 그 상
	및 기반(3)으로 구성되며, 외형을 동일한 형	부에 형성된 토류체(2)
	상으로 하여 상하좌우로 연속 부착 시공이	○ [도10] 동일한 형상의 객토, 복토블록
1	가능하게 한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다각형	(1A)를 상하좌우 연속으로 부착 시공
	형상이고,	○ [0012]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객토, 복토
		블록에 본 발명을 적용
	각각의 블록(1)의 기반(3)의 접합부는 지그	○ [0006] 즉, 빗물 유로(3)의 큰 지그재그
	재그 형상으로 하여 빗물통로를 형성하고	상의 사행(蛇行)은 토류체(2)의 배열에 의
2		해 이루어지고, 그보다 작은 지그재그상의
		사행(蛇行)은 토류체(2)의 측면부(21)에 형
		성된 큰 요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	각각의 코너 부분을 45도로 모따기함과 동	○ [도4] 기반을 이루는 측벽 중 일부
3	시에,	(1411)가 45도로 모따기
	상기 단위 블록의 외주부와 상기 캐스트 스	○ [도4], [도5], [도6] 블록의 외주부 내측
4	톤의 사이에는 제방부(堤防部)를 설치하고,	에 형성된 제방부(4)
		○ [0007] 제방부(4)의 정상부(41)는 직선
		혹은 사행하는 곡선이지만 수평으로 이루
	사기 덴바티의 전사티르 지그제고 청사으로	어지며, 정상부(41)의 높이 이하에서는 토
5	상기 제방부의 정상부를 지그재그 형상으로 	사는 흐르지 않고 객토상으로 퇴적해 흐름
	하고 측면부를 파형으로 하며,	이 완만한 경우에는 정상부(41)를 넘어 토
		류체(2)의 높이까지 달해 복토상으로 토사
		가 퇴적한다.
	상기 단위 블록의 양단부의 근방에 상하 방	○ [도4] 블록의 양측에 형성된 삽입공(6)
6	향으로 단위 블록 고정 연결용을 겸한 시공	○ [도9] 삽입공(6)에 삽입된 연결봉(7)
	관통봉용 관통공을 설치하고,	
7	상기 관통공은 상기 단위 블록을 조합한 때	○ [도10] 블록들의 삽입공(6)에 연결봉(7)

	에는 상하 방향으로 직선 형상으로 연통하	이 상하 직선 형상으로 삽입되어 설치
	도록 설치되고,	
	상기 관통공의 출입구에는 공간을 구성하는	○ [도4], [도9] 삽입공(6)의 입구에 형성된
	통수용(通水用) 절단부를 형성하는 오목부를	배수함몰부(5)
8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블록	○ [0008] 배수 함몰부(5)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공간에서 연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함몰부는 지반
		에 통하는 배수구멍을 겸함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전제부 및 구성요소 6 내지 8

- (1) 전제부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호안[하천]⁴⁾ 등에 사용하는 캐스트 스톤[토류체]을 배치한 콘크리트 블록인 점에서 동일하다.
- (2)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블록 양단부의 근방에 상하 방향으로 관통봉[연결봉]용 관통공[삽입공]을 설치한 점에서 동일하다.
- (3) 구성요소 7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관통공[삽입공]이 블록을 조합할 때 상하 직선 형상으로 연통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 (4) 구성요소 8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관통공[삽입공]의 출입구에 공 간을 형성하는 통수용 절단부[배수함몰부]를 형성한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1 내지 3.4 및 5

(1)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면부[토류체], 기반으로 구성된 블록들이 상하 좌우로 연속 부착 시공이 가능하게 한 직선으로 이루어지게 다각형 형상인 점

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및 기재를 대괄호([]) 내에 기재한다. 이하 같다.

에서 동일하다. 즉, 선행발명 1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형상의 기반(11A)에 함몰부(13, 15)와 배수 함몰부(5)가 더 구비된 것일 뿐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을 제3호증, [도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1은 이웃하는 단위 블록의 기반 사이에 사실상 이격 공간 없이 전체가 모두 부착된 형태로 구성되어 단위 블록간 지지력을 높이고 배수유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구성요소 1에서 단위 블록이 상하좌우로 연속하여 부착 시공이 가능하도록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다각형 형상이라는 제한이 있을 뿐'이웃하는 각 단위 블록이 그 기반 사이에 이격 공간이 없이 부착된 형태'라는 접합면형태의 한정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청구항을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근거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블록 기반의 접합부를 지그재그 형상으로 하여 빗물통로를 형성한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2의 기반 접합부에 형성된 지그재그 형상의 빗물통로가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의 청구항 기재 및 [도 1, 3, 4, 5, 10, 11]에 도시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빗물통로는 기반과 기반 사이의 접합부에 형성되는 것인바, 선행발명 1에는 블록을 이루는 기반의 단면이 거의 사다리꼴 형상이라는 기재가 있고, 동일한 다각형 단위 블록을 상하 좌우로 결합시키고 있는바(을 제3호증, 식별번호 [0008] 및 [도 10]),

선행발명 1에서도 연속되는 단위 블록의 대면하는 기반의 접합부에 지그재그 형상의 통로가 형성될 것임이 자명하여 구성요소 2와 동일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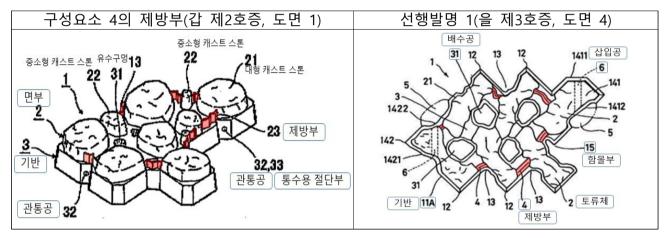
(3)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블록을 이루는 기반의 코너 부분을 45도로 모따기 한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3은 각각의 코너를 45도로 모따기 한 반면, 즉 선행발명 1(을 제3호증)의 [도 4]에서 오른쪽 삽입공(6)의 상면이 모따기 되어 있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코너 일부만 45도로 모따기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① 선행발명 1의 '종래 기술'에서 복토 블록의 모서리 각각에 모따기부를 형성하여 훅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블록 분야에서 모따기는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쉽게 채택되는 설계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고(을 제3호증, [도 3]), ② 선행발명 1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선행발명 6에서 블록의 모든 코너에 절각면(a)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제5호증, [도 1, 2])을 고려하면,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구체적인 설계환경에 따라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구성요소 4, 5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단위 블록의 외주부와 캐스트 스톤[토류체] 사이에 제방부를 설치한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 은 제방부의 정상부를 지그재그 형상으로 하고 측면부를 파형으로 한 점에서 동일하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4, 5의 제방부는 '단위 블록의 외주부와 캐스트 스톤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제방부의 정상부를 지그재그 형상으로 하고 측면부를 파형으로 하여 빗물이 제방부 측면을 따라 유동하도록 구성됨으로써, 단위블록 면부(2) 내 빗물 유동을 캐스트 스톤과 제방부에 의해 일정 부분 가두어 놓는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빗물의 유동 흐름을 안내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므로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의 1에서도 블록의 외주부와 토류부 사이에 제방부가 설치되어 빗물을 일정 부분 가두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위 표의 적색 부분), 선행발명 1에 제방부의 정상부가 사행하는 곡선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바(을 제3호증, 식별번호 [0007]) 정상부가 사행하는 곡선인 경우 측면이 파형으로 형성되어 빗물의 흐름을 안내하는 기능을 가질 것임은 자명하므로, 이는 구성요소 5의 제방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비결과 종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구성요소 3을 제외하고는 선행발명 1 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및 작용효과를 갖는 대응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구성요소 3에서 차이가 나는 점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에 비하여 현 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 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